

우리나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영한 (서울시립대), 문성훈 (한림대)



# 차례

---

---

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연혁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현황
3. 국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견해
4. 해외 파생상품 과세제도 사례
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장에 미친 영향분석
6. 파생상품 과세의 문제점
7.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개선방향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연혁

---

- 2004년 :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한 **기타소득** 10% 과세 논의 -> 국회제출, 입법무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의
- 2012년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에 대한 거래세 세법 개정안 마련, 실제 과세로는 이어지지 않음
- 2014년말 소득세법 개정. 파생상품 자본차익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근거 마련. 2016년부터 과세

# 현행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규정

---

## 과세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2에 따르면 미니코스피200선물과 미니코스피200옵션이 여기에 해당하며 2016년 7월부터 과세되기 시작함.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현행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규정

---

- 구분과세 :

- ❖ 과세대상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연간 합산하여 과세

-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함.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에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 적용

- 손실의 익년도 이후 이월공제 허용 안함.

- 예정신고는 면제. 확정신고. 파생상품 거래내역 제출의무 있음

- 세율은 원래 20% 이지만, 2018년 현재 탄력세율 10% 적용. (2016년 도입당시는 5% 였으나 2018년 4월 이후 10% 적용)

# 2016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세수

구분	신고건수 (1)	양도가액 (2)	취득가액 (3)	필요경비 (4)	양도차익 (5=2-3-4)	결정세액 (6)
<b>2016년 합계</b>	<b>8,012</b>	<b>410,667,795</b>	<b>409,822,159</b>	<b>42,351</b>	<b>803,285</b>	<b>39,164</b>
양도차익규모 5천만 이하	6,444	129,807,772	129,697,030	17,704	93,038	3,847
1억 이하	745	52,356,238	52,298,183	5,597	52,458	2,530
2억 이하	415	57,812,144	57,748,945	5,667	57,533	2,825
3억 이하	150	34,435,681	34,396,491	2,344	36,846	1,824
5억 이하	120	21,881,867	21,833,952	2,606	45,309	2,250
10억 이하	80	13,030,919	12,973,273	2,215	55,431	2,761
20억 이하	36	47,131,152	47,079,551	3,416	48,185	2,405
30억 이하	8	6,507,781	6,488,497	174	19,110	955
50억 이하	8	24,222,481	24,192,267	949	29,265	1,462
100억 이하	4	5,098,129	5,068,741	519	28,869	1,443
100억 초과	2	18,383,631	18,045,228	1,161	337,242	16,862

# 파생상품 과세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의 논의

---

- 박훈(2015)

- ❖ 파생상품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검토 : 일본 사례(3년 공제), 세수변동예상분이 크지 않다는 검토결과 등
- ❖ 구분과세 : 과세형평문제, 기초자산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한 조세회피 문제 우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함께 고려필요

- 전병욱과 최유진(2015)

- ❖ 파생상품과세, 현물 비과세로 인한 파생상품 헷지효율성 감소와 가격왜곡가능성
- ❖ 파생상품 과세로 인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위축, 주식현물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 ❖ 현물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

# 파생상품 과세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의 논의

---

- 이신희(2014)

- ❖ 헷지거래는 통합적 관점에서는 수익이 없는 거래임 – 파생상품은 양도세, 현물주식은 거래세를 부담
- ❖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시 과세되는 형평성 문제
-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과세상 형평성 문제

- 김수성과 최원석(2015)

- ❖ 파생상품은 거래세에 비해 세수는 크지 않은 반면 조세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 파생상품 자본이득이 시장에 미치는 과세효과

---

- 전병현과 윤선중(2017)

-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전후 과세대상인 코스피200지수선물, 옵션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였던 미니코스피200지수선물, 옵션의 양도세 도입 전후 3개월간의 투자자별 거래대금비중을 비교
- ❖ 분석결과 파생상품에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
- ❖ 양도세 도입이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효율성 측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함.**

## 양도세 도입전후 3개월간 거래대금 비중차이(전병현과 윤선중(2017))

괄호안의 값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Newey-West HAC 공분산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t-통계량을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낸다.

	Mini-KOSPI200			KOSPI200			DID = (6)-(3)
	도입 전(1)	도입 후(2)	(3) = (2)-(1)	도입 전(4)	도입 후(5)	(6) = (5)-(4)	
개인 거래대금비중(%)							
선물	17.4677	23.6345	6.1667*** (8.28)	26.9279	27.6957	0.7678 (1.63)	-5.3889*** (-6.13)
콜옵션	14.0450	34.1502	20.1052*** (16.17)	30.0732	28.6111	-1.4620*** (-2.93)	-21.5673*** (-16.10)
풋옵션	12.2812	32.6275	20.3463*** (21.94)	28.7132	27.2785	-1.4347*** (-3.08)	-21.7810*** (-20.99)
기관 거래대금비중(%)							
선물	30.4753	24.2030	-6.2724*** (-7.35)	13.6677	12.1130	-1.5547*** (-5.72)	4.7176*** (5.27)
콜옵션	38.9275	16.8607	-22.0667*** (-16.52)	9.9935	10.0159	0.0223 (0.05)	22.0891*** (15.57)
풋옵션	40.5530	17.3390	-23.2139*** (-21.92)	8.4378	8.9150	0.4771 (1.08)	23.6910*** (20.65)
외국인 거래대금비중(%)							
선물	52.0573	52.1621	0.1048 (0.24)	59.4037	60.1925	0.7887 (1.43)	0.6839 (0.97)
콜옵션	47.0273	48.9888	1.9615*** (6.54)	59.9326	61.3715	1.4389 (1.91)	-0.5225 (-0.64)
풋옵션	47.1651	50.0322	2.8670*** (6.54)	62.8476	63.8055	0.9578 (1.19)	-1.9092** (-2.08)

#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코스피200선물의

## 투자자 유형별 거래대금 추이와 거래대금 구성비율 차이 분석(단위 :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투자	7,993	7,271	4,113	2,645	1,700	1,297	892	838
보험	37	59	50	34	20	23	21	25
투신	153	223	191	187	195	163	176	176
은행	62	60	59	28	23	18	12	16
기타금융	19	6	1	0	0	1	1	0
연기금	55	107	105	45	10	10	13	60
기타법인	307	335	126	163	75	91	65	90
개인	5,393	7,421	5,112	3,944	2,763	2,674	1,983	1,851
외국인	5,874	7,037	6,130	5,796	4,973	5,519	5,208	5,288
합계	19,893	22,520	15,887	12,843	9,759	9,797	8,369	8,344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투자	40.18%	32.29%	25.89%	20.60%	17.42%	13.24%	10.66%	10.04%
보험	0.18%	0.26%	0.31%	0.27%	0.20%	0.23%	0.25%	0.30%
투신	0.77%	0.99%	1.20%	1.45%	2.00%	1.67%	2.10%	2.11%
은행	0.31%	0.27%	0.37%	0.22%	0.23%	0.18%	0.14%	0.19%
기타금융	0.10%	0.03%	0.01%	0.00%	0.00%	0.01%	0.01%	0.00%
연기금	0.28%	0.48%	0.66%	0.35%	0.10%	0.11%	0.15%	0.71%
기타법인	1.55%	1.49%	0.79%	1.27%	0.77%	0.93%	0.77%	1.08%
개인	27.11%	32.95%	32.18%	30.71%	28.31%	27.29%	23.69%	22.18%
외국인	29.53%	31.25%	38.59%	45.13%	50.96%	56.34%	62.22%	63.37%

#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코스피200콜옵션의

## 투자자 유형별 거래대금 추이와 거래대금 구성비율 차이 분석(단위 :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투자	73	74	52	31	23	18	11	10
보험	1	1	0	0	0	0	0	0
투신	2	1	0	0	0	0	0	1
은행	0	0	0	0	0	0	0	0
기타금융	0	0	0	0	0	0	0	0
연기금 등	0	0	0	0	0	0	0	0
기타법인	2	4	2	2	2	2	2	3
<b>개인</b>	<b>114</b>	<b>142</b>	<b>94</b>	<b>83</b>	<b>57</b>	<b>53</b>	<b>34</b>	<b>37</b>
외국인	117	186	158	146	93	104	71	80
합계	310	407	308	263	175	177	118	131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투자	23.69%	18.14%	16.88%	11.73%	13.00%	10.33%	8.93%	7.49%
보험	0.34%	0.17%	0.11%	0.03%	0.00%	0.00%	0.00%	0.01%
투신	0.51%	0.14%	0.11%	0.14%	0.05%	0.06%	0.15%	0.52%
은행	0.03%	0.01%	0.02%	0.02%	0.01%	0.01%	0.02%	0.03%
기타금융	0.00%	0.00%	0.00%	0.01%	0.04%	0.02%	0.03%	0.02%
연기금 등	0.04%	0.02%	0.02%	0.03%	0.06%	0.01%	0.01%	0.01%
기타법인	0.69%	0.86%	0.75%	0.82%	0.91%	1.16%	1.67%	2.27%
<b>개인</b>	<b>36.91%</b>	<b>34.95%</b>	<b>30.68%</b>	<b>31.75%</b>	<b>32.64%</b>	<b>29.70%</b>	<b>29.02%</b>	<b>28.00%</b>
외국인	37.79%	45.71%	51.42%	55.47%	53.29%	58.72%	60.17%	61.64%

#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코스피200풋옵션의

## 투자자 유형별 거래대금 추이와 거래대금 구성비율 차이 분석(단위 :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투자	64	76	42	28	20	17	10	8
보험	2	0	0	0	0	0	0	0
투신	1	1	0	0	0	0	0	0
은행	0	0	0	0	0	0	0	0
기타금융	0	0	0	0	0	0	0	0
연기금 등	0	0	0	0	0	0	0	0
기타법인	2	4	2	2	2	2	2	2
<b>개인</b>	<b>117</b>	<b>149</b>	<b>90</b>	<b>80</b>	<b>57</b>	<b>55</b>	<b>37</b>	<b>31</b>
외국인	139	235	167	152	103	117	85	76
합계	326	466	302	263	182	191	134	117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투자	19.64%	16.41%	13.98%	10.51%	10.80%	8.67%	7.81%	6.90%
보험	0.48%	0.09%	0.09%	0.03%	0.00%	0.00%	0.00%	0.00%
투신	0.46%	0.12%	0.12%	0.16%	0.05%	0.05%	0.13%	0.32%
은행	0.03%	0.01%	0.02%	0.02%	0.01%	0.01%	0.02%	0.04%
기타금융	0.00%	0.00%	0.00%	0.01%	0.03%	0.02%	0.02%	0.02%
연기금 등	0.06%	0.02%	0.02%	0.04%	0.06%	0.01%	0.01%	0.01%
기타법인	0.71%	0.86%	0.72%	0.84%	0.92%	1.22%	1.42%	1.50%
<b>개인</b>	<b>35.95%</b>	<b>32.02%</b>	<b>29.72%</b>	<b>30.49%</b>	<b>31.53%</b>	<b>28.79%</b>	<b>27.61%</b>	<b>26.64%</b>
외국인	42.68%	50.47%	55.33%	57.90%	56.60%	61.23%	62.98%	64.57%

# 파생상품 과세의 해외사례

---

---

## ■ 미국

- ❖ 파생상품 거래의 자본차익 과세.
- ❖ 옵션 : 옵션의 실행, 양도, 소멸시 양도소득 인식, 실현주의 과세,
- ❖ 시장지수형 주식옵션 : 시가법에 따라 미실현이익 과세 미실현소득의 60%는 장기양도손익, 40%는 단기양도소득 취급
- ❖ 선도계약 : 선도계약으로 수취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계약체결 등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을 인식.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결정됨.
- ❖ 선물 : 시장지수형 선물계약은 시가법으로 과세. 개별 주식선물은 선도계약과 동일하게 과세.
- ❖ 스왑 : 정기지급, 비정기지급, 청산지급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름.

# 파생상품 과세의 해외사례

---

## ▪ 일본

- ❖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임.
- ❖ 증권 선물 거래, 유가 증권 지수 등 선물 거래 · 증권 옵션 거래, 증권 지수 등 옵션 거래, 외국환 증거금거래(FX 거래) · 커버드워런트(상장 커버드워런트, 점두 커버드워런트), 상품선물거래에 대해서는 20%의 세율 2013년부터 2061년까지는 소득세에 동일본지진 복구를 위한 부흥특별 소득세 0.315%(소득세의 2.1%)가 추가되어 20.315%로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신고분리과세)됨
- ❖ 구분과세 : 분리과세대상인 일정 파생상품 거래간 손익통산 가능, 다른 파생상품 거래와는 손익통산불가.
- ❖ 손실 이월공제 : 분리과세대상인 일정 파생상품 거래의 1년간 집계결과가 손실인 경우 매년 연속해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공제 가능.
- ❖ 선도계약 : 선도계약으로 수취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계약체결 등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을 인식.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결정됨.

#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간 조세중립성 저해 - 왜 구분하여 과세하는가?**

---

- ❖ 현행 세법은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 각각의 그룹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구분 과세
- ❖ 주식과 부동산의 구분과세의 명분 : 주식은 주식시장 육성 , 부동산은 부동산 투기방지 등의 별도의 정책목적, 투자대상으로의 성격 상이등으로 구분과세의 타당성 존재.
- ❖ 투자대상으로서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대체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정책목적을 찾기 어려움
- ❖ 주식과 파생상품의 투기성 차이 : 투기성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과세상 취급을 달리할 수 있는가?
- ❖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식과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정합성을 해치고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우려
- ❖ 주식과 주식파생상품을 통한 헷지거래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손익통산불가에 따른 과세발생



#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 과세대상 소득 분류의 비일관성

## 유사금융상품의 차별적 과세 :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은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및 옵션, 코스피 200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한정
- ❖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중 ELW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코스피200주식관련 ELS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코스피200주식관련 ETN은 비과세

## 금융상품의 과세대상 사건의 차별적 규정 :

- ❖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은 현물의 양도 및 환매가 아닌 상계 및 소멸,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을 과세사건으로 보아 과세,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은 환매도 과세사건에 포함
- ❖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임. 그러나,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와는 달리 파생상품의 상계, 소멸,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환매 등이 '양도'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 ELS, DLS은 정해진 조건 발생, ETN은 계좌간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에 따른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라는 양도소득과 수익분배라는 배당소득의 본질적 측면보다는 상품에 따라 소득분류가 결정**

#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 파생상품 과세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

- 과세대상 파생상품 :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시장지수형 장내파생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시장지수형 이외의 장내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장외파생상품은 비과세
- 개인의 파생상품 거래가 코스피200지수형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과세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장외파생상품은 과세포착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확대로 개별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절감 또는 회피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
- 장외파생상품 거래가능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완화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유인 제고
- 파생상품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장지수형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는 경우 향후 장내파생상품 중 시장지수형과 비시장지수형간 조세중립성,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간 조세중립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 소득과 손실간 비대칭적 과세체계

---

-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가 확대되는 데 비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세상 고려는 많지 않은 상황
-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해의 손익도 중요하지만, 투자기간 전체에 걸친 손익이 투자의 사결정에 중요한 역할
-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몇 년간 이월하여 향후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전체 투자기간 차원에서의 과세형평(time-related equity)의 문제가 발생
- 파생상품은 주식과는 달리 만기 또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 자동적으로 손익이 확정,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손익실현을 이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 거주자와 비거주자 조세형평

---

-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파생상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법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 OECD모델조세조약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거주지국 과세원칙, 한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될 것으로 보임.
- 개인이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비거주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이 장내파생상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세법에 의해서도 과세되지 않음.

# 개선방안 –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간 과세정합성 제고

---

- 미국은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손익을 통산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
- 일본은 주식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잡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다르게 하고 있고 양도소득과 잡소득간 손익을 통산하고 있지 않음
- 주식과 주식에 대한 대체재로 볼 수 있는 주식관련 파생상품간 손익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
-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손익만을 통산할 것인지, 주식과 주식 이외의 파생상품, 예를 들어 해외파생상품 손익과도 통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주식에 대한 세율과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세율로 통합할 것인지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필요
-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공제를 허용해질 경우 손실은 즉시 실현하고 이익은 이연하는 절세계획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 존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

# 개선방안 – 파생상품관련 상품의 소득분류 양도소득으로 일치

---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경제적 실질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파생상품의 양도 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유사한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의 성격보다는 자본차익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검토
- 차선택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 유사파생상품에 대해서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 조세중립성 제고

# 개선방안 – 파생상품 과세대상 범위 합리화

---

- 장내파생상품은 과세하고 있으나 장외파생상품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개별자산 대상 파생상품 및 주식 이외의 금리 등 파생상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확대할 필요
- 과세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취급은 다르게 할 필요. Ex)장외파생상품은 소득이나 자산규모가 큰 개인 전문투자자만 거래가능. => 수직적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세부담을 장내파생상품보다는 높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
- 해외사례
  - ❖ 미국 : 포괄주의를 채택,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음
  - ❖ 일본 : 잡소득이라는 소득구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포괄주의를 채택 모든 파생상품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분리과세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장외 또는 해외파생상품보다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세제상 우대.

# 개선방안 – 파생상품 손실 이월공제 허용

---

-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의 기간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파생상품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
- 파생상품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면 장내와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가능



# 개선방안 –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양도소득 과세범위 일치

---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거주지국에서 과세,
- 이는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또는 조세조약이 있어도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소득을 과세
-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장지수형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비해, 비거주자는 국내세법에 의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폐지할 필요

# 결론

---

---

현행 파생상품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 첫째,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각의 그룹에서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품간 조세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 - 둘째, 파생상품의 법적형식에 따라 ELS는 배당소득, ELW는 양도소득으로 다르게 과세되는 등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투자상품간 의사결정 왜곡을 야기
- - 셋째, 파생상품 과세대상의 범위가 주로 시장지수형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장외파생상품은 과세되고 있지 않아 투자상품간 조세중립성 및 투자자간 수직적 공평성의 문제가 있음
- - 넷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가 확대되는 데 비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세 상 고려는 많지 않아 소득과 손실의 과세취급이 비대칭적
- - 다섯 번째,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수평적 조세 형평의 문제가 있음

# 결론

---

## ■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첫째, 주식과 주식에 대한 대체재로 볼 수 있는 주식관련 파생상품간 손익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이 대체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다른 것을 다르게 과세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구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경제적 실질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양도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으로 통일하여 유사한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향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개별자산 대상 파생상품 및 주식 이외의 금리 등 파생상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의 기간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파생상품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위해서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